

---

# 소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2017. 02.02.

소 양 중 학 교

# 소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1998. 5.20.)  
개정(1999. 5.18.)  
개정(2000. 3.11.)  
개정(2000. 6.07.)  
개정(2002. 3.11.)  
개정(2003. 9.26.)  
개정(2007.10.02.)  
개정(2011.07.19.)  
개정(2016.02.15.)  
개정(2017.02.0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및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양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단,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5.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과 청원 심의

1.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2.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 필요 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 학부모와 우리 학교 교원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7.19.>

⑤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5조2(위원의 자격상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를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7.19.>

제5조의3(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 <신설 2016.02.15.>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학교운영위원이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7.19.>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개정 2011.07.19.>

③제5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④삭제 <개정 2011.07.19.>

##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②위원 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 위원회운영) ①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2명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 가능 <개정 2016.02.15.>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1인 1기표)

⑥개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선거인 명부 작성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우리 학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3조(보궐선거)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장 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생활지도소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007. 10. 2.개정>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에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 제5장 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학년 초에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이를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공개의 원칙)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총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설 2011.07.19.〉

제23조1(의견 수렴 등)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 할 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7.19.〉

제24조(건의사항 처리)①제2조 제①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9.〉

제27조(시정명령)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7.19.>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9조(학교발전기금)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①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11.07.19.>

##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위원회의 규정개정은 재적위원 3/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초·중등교육법(1997. 12. 13. 법률제5438호) 및 동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에 의거 위원 임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